



##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 커피원두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 표시토록 개선(시행일 '28.1.1.)
-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

### ①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②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함

### <일반 가공식품 / 주류협업제품 비교 예시>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카드뉴스

|       |                      |     |     |                    |
|-------|----------------------|-----|-----|--------------------|
|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br>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영조 (043-719-2191) |
|       |                      | 담당자 | 사무관 | 임정은 (043-719-2188) |

#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재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 가능

<예시>



90% 제거

↓  
카페인 함량

기존 100mg → 10mg 남음



90% 제거

↓  
카페인 함량

기존 200mg → 20mg 남음



본래 카페인 함량에 따라  
실제 남아있는 카페인 양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선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



“디카페인”  
표시 가능



시행일 '28.1.1., 선택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